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9. ~ 6.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제안이유

- 시민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기여

2. 주요내용

-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목적·정의(제1조 ~ 제4조)
-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제5조 ~ 제8조)
-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9조 ~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2. ~ 2019. 5.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1.(여성가족과-101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기획예산실-547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2.(순천시 공고 제2019-902호)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 및 지원)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공익활동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익활동 지원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계획 수립, 평가, 정책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순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공익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제9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제공
2. 시민의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3. 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소양교육 등 활동가 육성
4.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공익활동단체의 상호간 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6. 공익활동단체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교육실,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정산 및 감독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자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위탁 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비·집기 구입비 및 운영비 소요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비, 집기 비품 구입비,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등)
- 2019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00,000천원 중 500,000천원 국비 확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400,000	-1,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세입(a)						
세출(b)	1,400,000	1,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400,000	1,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국 비	500,000	500,000	-	-	-	-
도 비						
시 비	900,000	7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백만원)
총 계			1,200
시설비	소 계		1,100
	설계용역비	◦증축 리모델링 설계용역 40,000,000원*1식=40,000,000원	40
	시 설 비	◦증축 리모델링 시설공사 1,112,315원*950㎡=1,056,700,000원	1,057
	시설부대비	◦증축 리모델링 시설부대경비 1,100,000,000원*0.3%=3,300,000원	3
자산취득비	소 계		100
	집기·비품 구 입 비	◦집기·비품구입 100,000,000원*1식= 100,000,000원	100

※ 2020년 이후 매년 50백만원 비용추계, 시설 운영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 749-5453)

시민참여팀장

방수진 (☎ 749-559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안 제4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5조)
 - *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과장급 5명으로 구성
-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안 제6조)
-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 요청 (안 제7조 내지 제8조)
- 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9조)
- 매각대금 등의 수령 및 배분 (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안 제12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안 제13조)
-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안 제14조)
-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안 제15조 및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22.(여성가족과-86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15.(기획예산실-470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26.(순천시 공고 제2019-870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순천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징수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
<신 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순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 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 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 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 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 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 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 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 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 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순천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u> <u>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u> <u>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u> <u>② 1차 심사는 징수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u> <u>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u> <u>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u> <u>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u>
<u><신 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u> <u>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u> <u>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u> <u>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u>
<u><신 설></u>	<u>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u>

현행	개정안
	<u>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u> <u>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u> <u>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u>

현행	개정안
〈신 설〉	3. <u>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u> 4. <u>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u> ② <u>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u>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u>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u> 1. <u>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u>채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u> ② <u>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u>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u> <u>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u> <u>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u> <u>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신 설></u>	<u>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u>
<u>제4조 (생략)</u>	<u>제17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을 준용’ 하고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 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 1등급 ~ 장애 3등급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4등급 ~ 장애 6등급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4.(여성가족과-1036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7.(기획예산실-56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28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1급~6급)” 을 “등록장애인” 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이상인 사람” 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3조(「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마목 중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를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4조(「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로, “장애1급, 2급, 3급 해당자” 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5조(「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6조(「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나목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의 개정)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애인(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국가정

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4호 중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4호 중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4조(「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장애 1급 내지 3급 해당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5조(「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1급 ~ 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6조(「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5호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료) ①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장애인(1급 ~ 6급) : 무료 ② (생략)	제8조(사용료) ①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장애인 : 무료 ② (현행과 같음)

○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의무) ① (생략)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 ----- -----

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 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 라. (생략)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u>따라</u> <u>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u> 바. ~ 사.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u>따른</u>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바. ~ 사. (현행과 같음)
--	--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입장료, 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50%를 감면한다. 1.~ 4. (생략)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u>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u> <u>다만, 장애1급, 2급, 3급 해당자의</u> <u>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u> 6. ~ 11. (생략)	제6조(입장료, 이용료 면제) ----- ----- ----- ----- ----- 1.~ 4. (현행과 같음) 5. ----- ----- <u>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u> <u>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u> <u>한다.</u> 6. ~ 11.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연회비 면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1-3급 등록 장애인</u> 3. ~ 5. (생략)	제10조(연회비 면제) ----- ----- ----- ----- 1. (현행과 같음) 2.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3. ~ 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센터 사용 또는 이용료 감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1-3급 등록 장애인</u> 다. ~ 마. (생략) ④ (생략)	제12조(센터 사용 또는 이용료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다. ~ 마.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 “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3. ~ 6. (생략)	제2조(정의) ----- ----- ----- -----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6. (현행과 같음)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1급 ~ 3급)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 3. ~ 5. (생략)	제11조(연회비 면제) -----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u> 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 4. ~ 6. (생략) ②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u>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 14. (생략)	제7조(입장료의 면제)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 6. ~ 14.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u>관람료 면제</u>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련) 1. ~ 3. (생략)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u>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u>.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u>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u>은 보호자 1명 추가 5. ~ 15. (현행과 같음)	[별표 2] <u>관람료 면제</u>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 <u>장애인등록증 소지자</u>. -----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5. ~ 1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u>관람료 면제</u>(제6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u>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u>.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u>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u>은 보호자 1명 추가 5. ~ 15. (생략)	[별표 2] <u>관람료 면제</u>(제6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 <u>장애인등록증 소지자</u>. -----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5. ~ 1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u>시장·군수·구청장</u> 교부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자. 다만, <u>장애 1급 내지 3급</u>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6. ~ 16. (생략)	제9조(무료관람)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u> -----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 ----- 6 ~ 16.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1급~3급 등록 장애인</u> 5. ~ 6.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5.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3]				[별표 3]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사용료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사용료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15.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u>장애등급 1~3급</u>)을 동행한 보호자	현행과 동일	<u>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u>		15.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을 동행한 보호자	현행과 동일	<u>장애인등록증</u>
이용료	16.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이용료	16.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을 준용’ 하고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 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 2019년 본예산 5,430천원 ⇒ 추경편성 13,910천원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7.(여성가족과-1076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5. 9.(노인장애인과-2067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4.(기획예산실-59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48호)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로서 <u>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u> 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로서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정의) 제1호 :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13,950	-13,910	-23,200	-24,360	-25,600	-26,880
세입(a)						
세출(b)	113,950	13,910	23,200	24,360	25,600	26,88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13,950	13,910	23,200	24,360	25,600	26,880
국 비	-	-	-	-	-	-
도 비	0					
시 비	113,950	13,910	23,200	24,360	25,600	26,88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유료방송 이용요금
- 사업기간 : 2019년
- 산 출 액(2019년) : 13,910천원
- 산출근거(2019년)
 - 유료방송 이용요금 : 51세대×7,550원×6개월 = 2,310천원
256세대×7,550원×6개월 = 11,600천원
 - 대상 : 상반기 51세대, 하반기 256세대.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749-6766)
 장애인복지팀장 정 미(☎ 749-6267)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
- 2009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후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 따라 국비 매칭예산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여성장애인에게 일괄 1,000,000원씩 지급하고 있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000,000원, 장애3~4급은 700,000원, 장애5~6급은 500,000원” 을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1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7.(여성가족과-1076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4.(기획예산실-59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10.(순천시 공고 제2019-947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 장애5~6급은 500,000원” 을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000,000원, 장애3~4급은 700,000원, 장애5~6급은 500,000원</u> 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0,000원</u> 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신축 지원기준 금액에 대해 물가상승율 등으로 매년 증가되는 건축비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를 분석하여 결정

2. 주요내용

- 제5조(시설의 설치 기준) 제4항 별표1
 -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1의 기준에 준하되 건축비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장이 결정한다.
 - 별표 1 건축비(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7.(여성가족과-978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24.(기획예산실-52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30.(순천시 공고 제2019-859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복지회관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되 건축비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복지회관 신축지원 기준

☐ 건축 규모

구 분	30가구 미만	30~60가구	60가구 이상	비 고
건물면적	85㎡이하	100㎡이하	115㎡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의 설치 기준) ① ~ ③ (생략) ④ 복지회관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 1 의 기준에 <u>준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u> <u>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u> ⑤ (생략)	제5조(시설의 설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준하되 건축비를 포함하여 위원회</u> <u>심의를</u>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 건축규모 ☐ 건축비 복지회관 신축 지원 기준 금액은 m ² 당 750천 원 이내로 한다.	[별표] ☐ 건축규모(현행과 같음) ☐ <u>건축비(삭제)</u>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승주읍 공중목욕장 신축에 따른 위치 및 명칭 게재

2. 주요내용

- 제2조(위치 및 명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명칭	위치	비고
승주읍 공중목욕장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88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22.(여성가족과-863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22.(기획예산실-503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30.(순천시 공고 제2019-838호)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승주읍 공중목욕장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88	
주암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	
송광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0-7	
별량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해룡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황전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97	
월등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월등1길 10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별표】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비고	명칭	위치	비고
주암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		<u>승주읍</u> <u>공중목욕장</u>	<u>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88</u>	
송광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0-7		주암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	
별량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송광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0-7	
해룡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별량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황전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97		해룡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월등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월등1길 109		황전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97	
			월등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월등1길 10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9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순천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여 언론, 의료, 대학, 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심의위원회 조정
 - 심의위원회 위원정수 “11명 이내” 를 “15명 이내” 로 확대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1. ~ 4.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3. 14.(보건위생과-760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19.(기획예산실-33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1.(순천시 공고 제2019-5호)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11명 이내의 위원” 을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1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 <u>15명 이내</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함
- 순천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뷰티산업육성과 위생업소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심의위원 증감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심의위원	11명	15명	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4,000	-800	-800	-800	-800	-800
세입(a)						
세출(b)	4,000	800	800	800	800	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4,000	-800	-800	-800	-800	-800
국 비						
시 비	4,000	800	800	800	800	8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연간) : 8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4명×2회=8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정 순 금 (☎749-6820)

공중위생팀장 남 양 우 (☎749-6835)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9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2017.5.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센터 설치 운영 조례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15. ~ 5.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12(여성가족과-608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15.(기획예산실-46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15.(순천시 공고 제2019-790호)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8부터 제26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단서 중 “「정신보건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호 외 부분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4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1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제목 “보고 및 감독”을 “지도 등 감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장부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3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 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연 2회”를 “분기 1회”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를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순천시 <u>정신건강증진센터</u>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u>정신건강복지센터</u>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13조의2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u>정신건강증진센터</u>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u>정신건강복지센터</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정신건강증진센터</u> "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u>정신건강복지센터</u> " ----- -----. 2. (현행과 같음)
제2장 <u>정신건강증진센터</u> 설치 및 운영	제2장 <u>정신건강복지센터</u> 설치 및 운영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순천시 <u>정신건강증진센터</u> ”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 --- <u>정신건강복지센터</u>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인력) ① (생략) ② <u>정신건강증진센터</u> 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u>정신보건센터</u> 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신건강복지센터</u> ----- ----- . 다만 <u>정신건강복지센터</u> ----- ----- -----
제8조 (생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3장 <u>정신건강증진센터</u> 운영의 위탁	제3장 <u>정신건강복지센터</u> 운영의 위탁
제9조(설치·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설치·운영) ①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u>정신의료기관</u> 2. ~ 3. (생략)	제9조(위탁) ① 제8조제1항----- ----- -----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1호에 따른 <u>정신건강증진시설</u>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 제8조제1항----- ----- ----- -----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2조 ----- ----- -----

현행	개정안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3. (생략)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제11조----- ----- 2.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지도 등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장부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 ~ ② (생략)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 ----- ----- -----
제16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8조 ~ 제20조 (생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와 같음)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0조(회의) ① ----- ----- 분기 1회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 제23조 (생략)	제21조 ~ 제22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3조 까지와 같음)
제24조(환자 등 지원) 「정신보건법」 제4조 에 따라 타법령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무 연고 정신질환자 통원치료비 및 응급입 원비(3일 이내), 우울·자살 위기자 발생 시 진료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환자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 ----- ----- ----- -----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지역보 건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순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 ----- ----- 「정신건강복지법」 ----- ----- ----- ----- ----- ----- -----
제26조 (생략)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8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사회재난의 보다 효율적인 피해수습 및 재난 복구를 위한 우리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 등)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제4조의3)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5. 3. ~ 2019. 5.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5. 11.(여성가족과-101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5. 1.(기획예산실-547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5. 3.(순천시 공고 제2019-905호)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시대책본부회의” 라 한다)” 를 “(이하 “순천시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 로 하고, “(이하 “재난피해자” 라 한다)” 를 “(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 중 “고려하여 시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를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순천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 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를 “피해주민에

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로 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를 “원인 제공자”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 을 “피해주민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가” 를 “피해주민이”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 를 “피해주민이” 으로,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지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를 “시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 으로 하고 “계좌” 를 “예금계좌” 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계좌” 를 “예금계좌로 하며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 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 으로 하고 “위반됨” 을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대책본부회의” 를 “순천시 대책본부회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결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 <u>시대책본부회의</u>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 <u>재난피해자</u> ”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결정) ① ----- ----- ----- ----- “ <u>순천시 대책본부회의</u> ” ----- ----- ----- “ <u>피해주민</u> ”이라-----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 <u>피해주민</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 <u>피해주민</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 ----- <u>피해주민</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	② -----

현행	개정안
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u>고려하여 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 ----- -----<u>고려한 비용으로 한다.</u>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순천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 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u>다른 법령이나 조례</u>	제5조(중복지원 금지) <u>피해주민에게 다른</u>

현행	개정안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u>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u>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u>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u>재난피해자</u>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재난피해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u>재난피해자</u>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의</u>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u>법령이나 조례에 따라</u> ----- ----- -----, <u>원인제공자</u> ----- ----- -----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u>은 해당 <u>피해주민으로</u>-----. ② ----- <u>피해주민은</u> ----- ----- ----- -----. ③ ----- <u>피해주민이</u>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u>피해주민이</u> ----- ----- -----<u>피해주민</u>----- ----- -----.

현행	개정안
⑥ (생략) 제8조(지급방법) <u>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u>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u>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u>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 제11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시대책본부회의</u>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방법) <u>시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 ----- 예금계좌-----</u> <u>----- 예금계좌-----</u> <u>----- 피해주민-----</u> <u>-----.</u> 제9조(환수) ----- <u>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 위반되어 지원되었음-----</u> <u>-----.</u> 제11조(그 밖의 주요사항) ----- <u>-----</u> <u>-----</u> <u>----- 순천시</u> <u>대책본부회의-----.</u>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9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8.

1. 개정이유

- 농민들의 농막건립에 따른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막을 건축신고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도록 완화
- 용도변경 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확대
-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현장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세분화
- 다중이용건축물 및 대규모 분양건축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
-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3. 27. ~ 4.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25.(여성가족과-1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27.(기획예산실-383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3. 27.(순천시 공고 제2019-636호)
-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9. 4. 26.(건축과-1516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5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으로 한다.

제22조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2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

제32조제4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22조에 따른 별표4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 신청 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조례 제22조 관련)

(단위 : 소요시간)

규 (연면적 합계)	건축허가·신고	설계변경	임시사용 승인	사용승인
200제곱미터 미만	0.9	0.45	1.5	3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2	0.60	2.0	4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1.5	0.75	2.5	5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8	0.90	3.0	6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1	1.05	3.5	7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5	2.25	7.5	1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	3.00	10.0	20
30만제곱미터 이상	9	4.50	15.0	30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산정식 :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소요시간×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예) 2019년 1월 1일 기준 시 334,901원/일(천원 미만 절사)

334,901원 ÷ 8시간 = 41,000원/시간

※ 검사대상 건축물 면적에 따른 수수료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Y = Y1 - \frac{(X - X2) \times (Y1 - Y2)}{(X1 - X2)}$$

(X: 해당면적 X1: 큰면적 X2: 작은면적
Y: 적용시간 Y1: 작은면적시간 Y2: 큰면적시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생략)	제10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18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 일 것)	4. -----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과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1조(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u>500제곱미터</u>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 ----- ----- <u>100제곱미터</u> ----- -----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

현행	개정안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u>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u>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 1시간(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100% <u><신 설></u>	----- ----- ----- ----- ----- ----- <u>지급한다.</u> <삭 제> <삭 제> <u>제24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제3항에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u> 1. <u>다중이용 건축물</u> 2.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1. ~ 2. (생략) <u><신 설></u>	제27조(도로의 지정)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u>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현행	개정안
높이제한 ① ~ ③ (생략)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제22조

-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허가, 설계변경,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220,000	-40,000	-42,000	-44,000	-46,000	-48,000
세입(a)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세출(b)	280,000	52,000	54,000	56,000	58,000	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280,000	52,000	54,000	56,000	58,000	60,000
국비						
도비						
시비	280,000	52,000	54,000	56,000	58,000	6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세입 : 건축허가 등 수수료(12,000천원/년) [순천시 건축조례 별표1]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연면적 합계	금액	건수	허가수수료	비고
계		942건	12,000	
200㎡미만	단독주택 4천원	310	1240	
	기타 9천원	150	1,350	
200㎡이상 1천㎡미만	단독주택 6천원	100	600	
	기타 2만원	350	7,000	
1천㎡이상 5천㎡미만	5만원	30	1,500	
5천㎡이상 1만㎡미만	10만원	1	100	
1만㎡이상 3만㎡미만	20만원	1	200	

○ 세출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52,000천원/년)

[순천시 건축조례(안) 별표4]

○ 세출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합계			건축허가			설계변경			사용승인		
연면적	건수	금액	시간	건수	금액	시간	건수	금액	시간	건수	금액
620		52,000	-	357	18,684	-	86	2,09	-	177	31,007
200㎡미만	145	10,294	0.9	80	3,240	0.4 5	15	304	3	50	6,750
200㎡이상 1천㎡미만	410	33,120	1.2	250	13,500	0.6	60	1,62 0	4	100	18,00 0
1천㎡이상 5천㎡미만	55	7,313	1.5	20	1,350	0.7 5	10	338	5	25	5,625
5천㎡이상 1만㎡미만	5	405	1.8	5	405	0.9	0	-	6	-	-
1만㎡이상 3만㎡미만	5	868	2.1	2	189	1.0 5	1	47	7	2	632

- 2019년 1시간 수수료 : 45천원(367,654원*/8시간)

* 2019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기술사/건설) : 367,654원

- 2019년 본예산 : 42,041천원 예산반영됨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시민복지국 허가민원과 과장

채승연 (☎ 749-5505)

건축허가팀장

오행석 (☎ 749-5833)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장

이태문 (☎ 749-6377)